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22. 3. 11.(금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	담당자	• 과장 유경수, 사무관 강경범, 주무관 김승진 • ☎ (044) 201-4244, 4255, 4249 • 과장 오성운, 사무관 황재갑, 고한승, 김민수 • ☎ (044) 201-4259, 4786, 4311
보 도 일 시		2022년 3월 11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11.(금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안전규정 위반, 항공사 운항 · 조종사 자격정지 -10일 『행정처분심의위원회』서 항공사2개 · 항공종사자10명 행정처분 의결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제주항공,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 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하고,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*을 심의 · 의결(3.10)하였다고 밝혔다.

* 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(조종1, 정비3), 23일(조종3, 정비2), 60일(정비1)

□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· 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(제주항공) 인천/홍콩 노선을 운항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운송한 건과, 미끄럼방지장치(Anti-Skid)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지켜야 하는 운항절차 미준수 건 등 재심의 2건에 대해 위반노선인 인천/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20일*과 인천/청도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7일**을 처분하였다.

* '18.1.1부터 4.25까지 제주항공이 인천/홍콩 노선에서 총 20회에 걸쳐 위험물(리튬배터리)을 허가 없이 운송

** '19.2.28. 제주항공 8401편(인천→청도)이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에 착륙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평면급격 마모(Flat Spot)에 의한 파열 발생

- (에어로케이) 비행 중 발생한 엔진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 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건에 대해 청주/제주 노선의 항공기 운항 정지 6일을 처분하고,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(5명)와 조종사(4명)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(과거 범 위반이력이 없는 경우 15일, 2회 이상 위반인 경우 23일)을 처분하였다.
 -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.
 - 다만, 제주항공의 인천/홍콩 및 인천/청도노선의 항공기 운항 정지는 해당 노선이 코로나-19로 운항중지 상태이므로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·의결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,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.
- 특히, 코로나-19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
 -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를 공유하고,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 안전정책과 강경범 사무관(☎ 044-201-4255), 항공운항과 고한승 사무관(☎ 044-201-47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